

「고흥군 사회적 고립 1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예방계획의 수립(안 제6조)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

○ 지원대상(안 제8조)

-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의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읍·면 사무소 및 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자

○ 예방 및 지원사업(안 제9조)

- 심리상담 및 정기적인 안부 확인, 긴급의료 지원 서비스 등

3. 제정조례안: 별도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2. 11. 8. ~ 2022. 11. 13.(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 061-830-6065,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범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 4. 방문간호서비스
-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 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
10. 일자리 알선
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흥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